



행정안전부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소형차전용도로 내 대형차 통행제한 안내 협조 요청

1. 평소 도로교통사고 등 재난안전관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에서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소형차 전용도로로써 신월여의지하도로('21.4월) 및 서부간선지하도로('21.9월)를 개통, 높이3.0미터 초과 시 차량제한을 위한 안내표지판, 높이제한시설 등을 다수 설치하였으나, 상세 설치기준이 없어 운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형화물차 및 대형버스의 오진입 및 끼임사고가 지속 발생*하여 뒤따르던 차량의 급제동 등으로 인한 터널 내 대형사고 우려, 시설물 파괴, 장시간 교통통제 등 2차 피해도 큰 실정입니다.
* 서부간선·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 이후 오진입 및 끼임 사고 과태료 354건 부과('21년 71건, '22년 206건, '23년 77건) (도로법 제77조, 운행제한·운행허가 위반 시 과태료 30~100만원)
3. 귀 기관에서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대형버스·대형화물차의 끼임·오진입으로 인한 대형재난·사고 방지를 위하여 서부간선지하도로 및 신월여의지하도로에 대하여 불임의 "서울시 소형차 전용도로 내 대형차량 통행제한 안내문"을 산하단체, 관련 업체 및 사업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 서울시 소형차전용도로 내 대형차량 통행제한 안내문 1부. 끝.

행정안전부 장관



수신자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개인중대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서울특별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서울특별시장(도로계획과장)

수석전문관

정성은

산업교통재난 전결 2023. 11. 28.

대응과장

이치선

협조자

시행

산업교통재난대응과-780

(2023. 11. 28.)

접수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3호

/ www.mois.go.kr

전화번호 044-205-6337

팩스번호 044-205-8902

/ jse6911@korea.kr

/ 대한민국 공개